

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

▣ 하위근로

- ① 13:35~17:00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상 근로시작시간을 13:00로 입력한 경우
→ 근로시작시간을 13:35으로 입력하고, 근로시간은 13:35~16:35로 입력해야 합니다.

*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. (본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)

② 일시적인 휴강(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) 시간에 근로한 경우

-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에 하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③ 근로기관(활동기관) 관리자(담당자)와 담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입력한 경우

-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작성하는 행위는 하위근로이며, 공공 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. 한국정책재단은 정기·수시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적발 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대리근로

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친구가 대신 근로한 경우

- 재단 및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정책생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,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.

▣ 대체근로

- ① 본인이 실수로 출근부를 잘못 작성하거나, 기관/대학담당자에게 출근부 대신 입력을 부탁하였으나 오입력된 경우

- 본인의 실수 또는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정책생(멘토) 본인에게 있습니다. 출근부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② 업무계획서의 날짜와 다른 날 근로한 후, 실제 근로일자가 아닌 기존 업무계획서의 날짜대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

- 업무계획서의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한 날짜로 출근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실제 근로내역은 업무계획서상 근로계획과 달라도 무방합니다.

**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정책사업 운영을 위하여
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부정근로 방지 안내

국가근로장학금 |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
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

“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범죄입니다.”



「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2020년 1월 이후 장학금 지급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. 부정근로(하위근로, 대리근로 등), 행정오류 등으로 부정이익 및 기타 불법행위를 통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하여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하고, 이차, 제제부기금(최대 5배),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• (환수범위) 공공채정환수법 시행(20. 01. 01.) 이후 부정근로(하위근로, 대리근로 등),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

- (근대중방)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,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명하여야 함. 증명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.

* 환수 대상 금액 = 부정이익 + 이차 + 제제부기금(최대 5배) + 가산금(세납금에 대한 연체료)

대학생 근로정책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) 참여 장학생(멘토)·근로기관(활동기관) 및 대학담당자는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부정근로 유형

-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(근로일 포함 최대 3일 이내)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한국장학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군복무기록·출입기록 등을 활용하여 부정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▣ 허위근로

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

예시

-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
-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(근로기관/활동기관과 답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

▣ 대리근로

근로장학생(멘토)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

예시

- 근로장학생(멘토)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

▣ 대체근로

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

예시

- 10:00~11:00(1시간) 근로를 실시하였으나, 13:00~14: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
- * 본인 및 기관/대학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

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

- ※ 사업 참여 제한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전체 참여제한

▣ 근로장학생(멘토)

- 하위근로: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
- 대리근로: 근로장학생(멘토)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(멘토)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- 대체근로: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
※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와 관련하여 범죄행위여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·의뢰, 고소·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근로기관(활동기관)



※ 부정근로 조장,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제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

• 근로기관(활동기관) 자격해제 발생사유

- 장학생 배정 후 일반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
- 사업취지에 반하여 제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
- 지속적인 인내에도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, 장학생 근무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장학생이 부정근로(허위, 대체, 대리근로 등) 발생 또는 조정하는 경우
-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
- 형사 사건 연루, 성희롱,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배정된 장학생 총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,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
-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
-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▣ 사업 참여 대학

-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
- 부정근로 발생 교내근로지 참여 제한(최대2년)
 - 대체·대리근로는 1년, 허위근로는 2년 참여제한하나,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 가능
-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정하거나 부정근로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리 시 소속 대학 예산 삭감

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

- 근로장학생(멘토)이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할 경우,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

- ① 근로장학생(멘토)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(활동기관)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
- ② 신고방법: 재단 홈페이지 > 국가근로장학금 > 근로장학관리 > 근로중지 사전신고

※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명자료 첨부 필요(병적증명서, 항공권 등),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

※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

▣ 부정근로 사례 신고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> 고객센터 > 의견있어요 > 진지민원